

2025년도 구미시의회 연간 총 회의 일수 연장의 건

제안연월일	2025. 2. 3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2025년도 구미시의회 연간 총 회의 일수 연장의 건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: 2025. 2. 3.

제안자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연간 회기 운영 계획에 없던 2월 임시회 운영으로 연간 회의 총 일수가 100일을 초과하게 되어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2025년도 연간 총 회의 일수 연장
 - 당초 : 100일(정례회 2회, 임시회 7회)
 - 변경 : 101일(정례회 2회, 임시회 8회(+1))

3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
- 「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56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연간 총 회의 일수)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